

'16년 달라지는 SW산업 진흥법

-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하도급 제도 -

2015.12.23.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Part I

SW품질성능 평가시험 제도의 이해

목 차

I. 제도 도입 배경

II. BMT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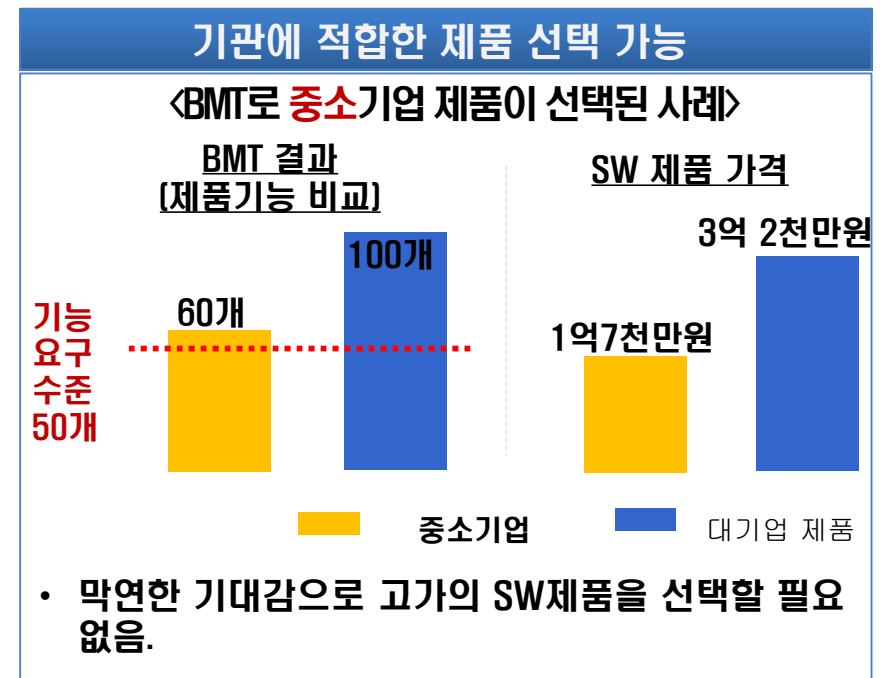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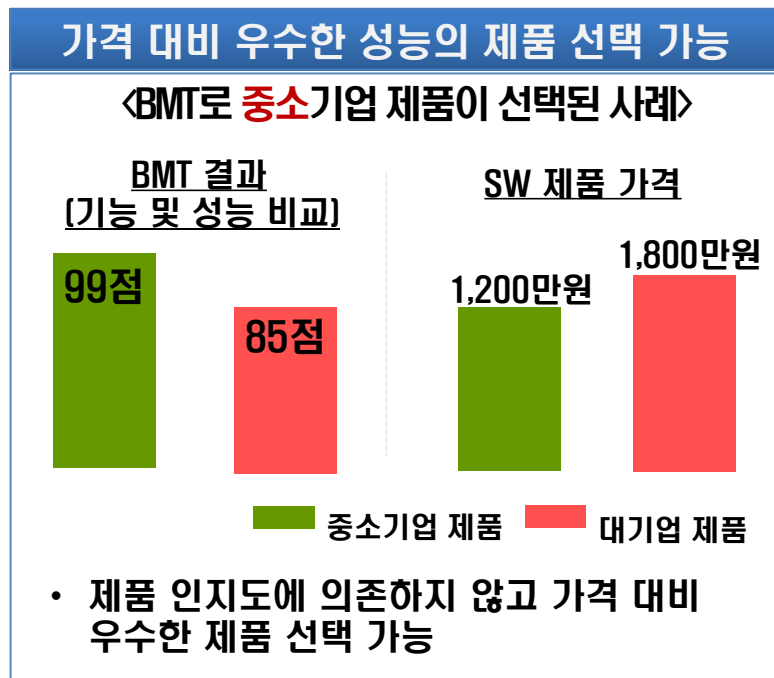
III. BMT 실시 고려사항

IV. BMT 제도 Q&A

1. 제도 도입 배경

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도 도입 배경

품질이 우수한 기업의 소프트웨어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실시 의무화



- 국가기관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
-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 경쟁 패러다임으로 전환
-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사장될 수 있는 우수 SW발굴 및 국내 SW시장 활성화

II . BMT 제도 소개

1.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제도 개요

국가기관등의 장이 우수한 SW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의 실시 의무화** 규정이 **SW산업 진흥법에 신설되었습니다.** (2016.1.1. 시행)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규 개정(신설)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분리발주 SW• 시험기관에 BMT 의뢰 절차• 시험기관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T 의뢰 세부절차 및 의뢰서• 시험기관 지정 세부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BMT 실시 또는 종전 시험 결과 활용• BMT 실시 방법, 절차 및 기준 수립

2. 적용대상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SW중 2개 이상
제품이 경쟁하는 경우 **BMT 대상**이 됩니다.



3. 시험비용 및 지정시험기관

[시험비용] BMT 실시를 위한 시험비용

- ⇒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험비용 부담 원칙
 - * BMT 제도를 자사 SW제품의 테스트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BMT 참여기업에게 시험비용 일부 부담 가능

[시험기관 지정] BMT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운용계획서 및 세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 전문인력 10명 이상, 평가시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독립된 공간 보유
- ⇒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시험 결과의 품질을 보증
- ⇒ 상용 SW 분야별 세부 시험모델 보유

4. BMT 실시 (1/2)

국가기관등에서 분리발주 SW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BMT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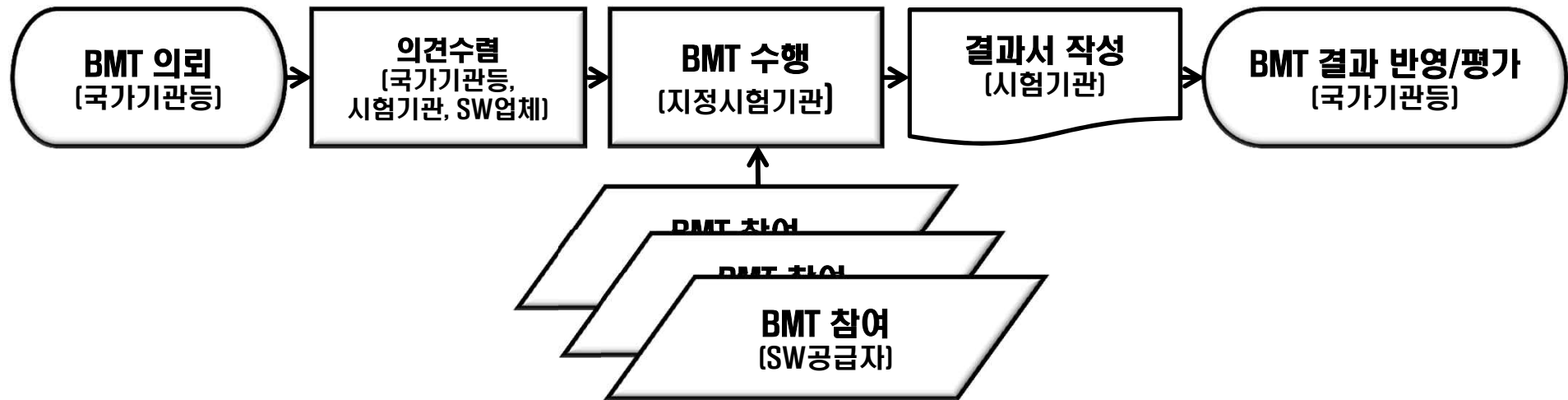
직접 BMT를 실시의 경우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4. BMT 실시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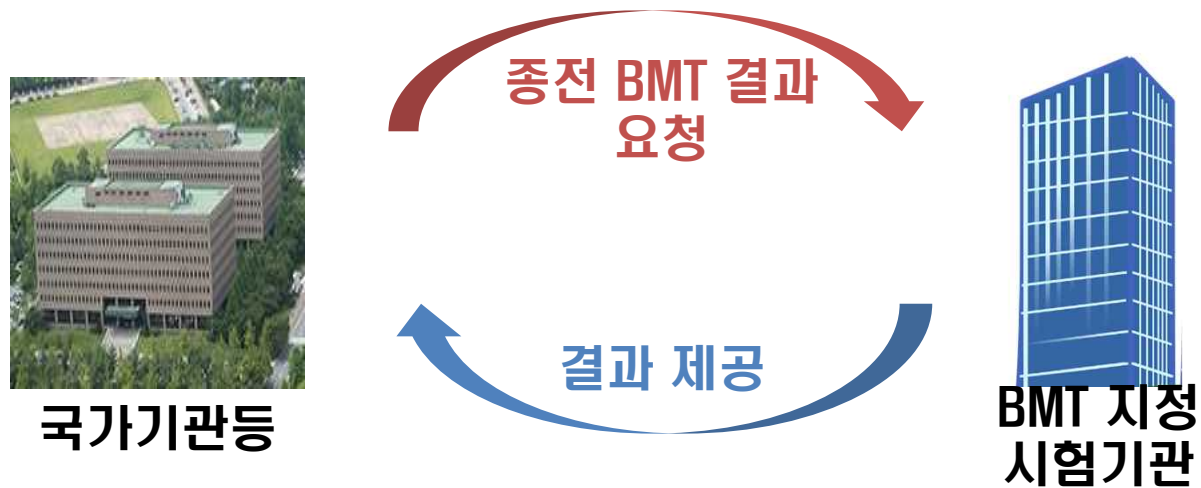


• 지정시험기관의 BMT 수행

- ✓ 국가기관등은 지정시험기관에 평가시험 신청 전 일정, 시험방법,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
- ✓ 평가시험에 참여할 SW업체는 설명회에서 평가시험 참여의향서 제출을 통해 평가시험 참여 가능
- ✓ 지정시험기관은 제출받은 시험대상 SW제품에 대해 평가시험을 수행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결과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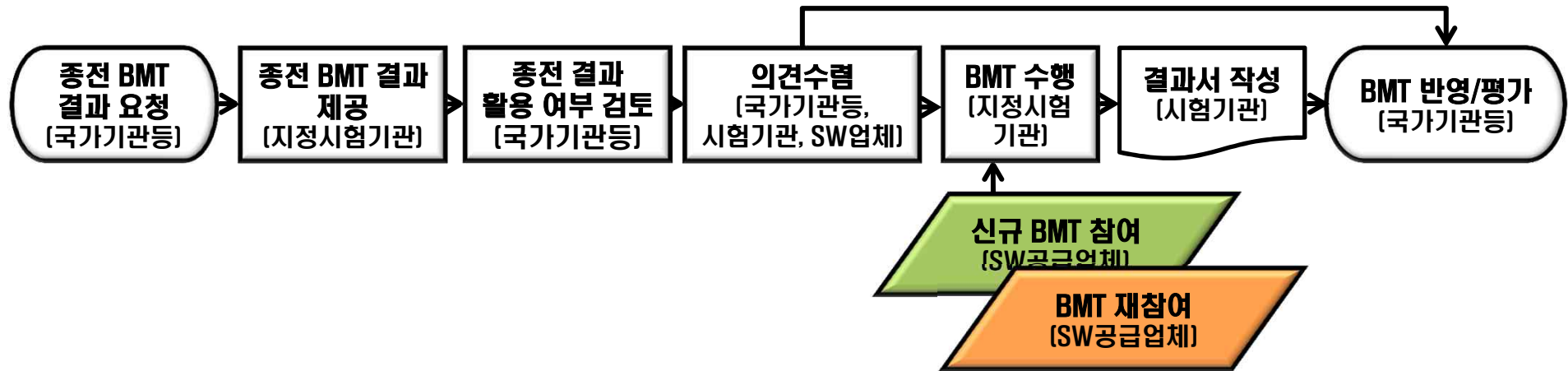
5. 종전 시험결과 활용 (1/2)

국가기관등이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SW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이미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전 BMT 결과 활용을 통하여 BMT 제도 효율성 극대화

5. 종전 시험결과 활용 (2/2)



• 이미 시행된 BMT의 결과서 활용

- ✓ 이미 수행한 BMT 결과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그 결과서를 제공받아 활용 여부를 판단
-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다시 BMT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6. BMT 실시 상세절차



III. BMT 실시 고려사항

BMT 실시 고려사항

구분	국가기관등	지정시험기관	SW공급업체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P 작성 • BMT실시계획수립 • 평가항목별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P 및 국가기관 시스템 등 환경 분석 • BMT 평가항목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P 분석 • BMT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분석
BMT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참석 및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T 수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참석 및 의견 제시
BMT 수행 및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T 결과 수령 및 구매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T 수행 및 결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기관의 BMT 수행 지원

IV. BMT 제도 Q&A

BMT 제도 Q&A (1/3)

• Q1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2016.1월 중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BMT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Q2 BMT는 언제 실시해야하나요?

- ✓ BMT 실시 시기는 국가기관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사업 공고마감 전, 후 언제든지 실시 가능합니다.
- ✓ BMT의 실시 여부 및 시기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BMT 제도 Q&A (2/3)

• Q3 BMT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만드나요?

- ✓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사전협의 하여 BMT 방법 및 기준안을 수립합니다.
- ✓ 이후 BMT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국가기관과 SW공급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기준 확정합니다.

• Q4 BMT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기재되나요?

- ✓ 기능은 작동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 ✓ 성능측정은 평가시험 대상 제품을 구동하여 측정된 결과수치를 기록합니다.

BMT 제도 Q&A (3/3)

- **Q5 종전에 BMT에 참여하였지만 제품이 업그레이드되어 다시 BMT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 ✓ 이미 수행한 BMT 결과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그 결과서를 제공받아 활용여부를 판단하되,
 -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다시 BMT를 원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결정하여 BMT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Q6 국가기관등이 BMT비용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BMT를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요?**
 - ✓ BMT제도가 15년 6월에 개정되어 16년 예산에 BMT 비용을 별도 편성하지 못한 국가기관에게는 미래부 SW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BMT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국가기관등에서 17년도 예산편성 시 BMT비용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Part II

SW사업 하도급 제도의 이해

목 차

- I. 제도 도입 배경
- II. 변경된 하도급제도 소개
- III. SW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사항
- IV. 하도급 제도 Q&A

1. 제도 도입 배경

1. 제도 도입 배경

SW사업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거래 문제

SW사업의 품질 저하

중소SW기업 수익 악화

전문SW기업의 성장 저해

SW기술자 처우 악화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산업 진흥법 개정('14.12월)

II. 변경된 하도급제도 소개

1. 하도급 제도 개요

개정된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주요 내용

-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
- 하도급 받은 SW사업의 재하도급 금지
- 사업금액 일정비율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로 참여 유도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

-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유
- 재하도급비율 제한(50%)
- 공동수급체 참여 위한 하도급 사업금액비율(10%)

시행규칙

- 하도급비율 제한의 예외사유(신기술, 전문기술)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고시

-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으로 전부 개정

2. 적용 대상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SW 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SW 산업 진흥법령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 적용

모두
해당

국가기관 등
법제13조의2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SW사업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재)하도급

“도급받은 SW 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다른 SW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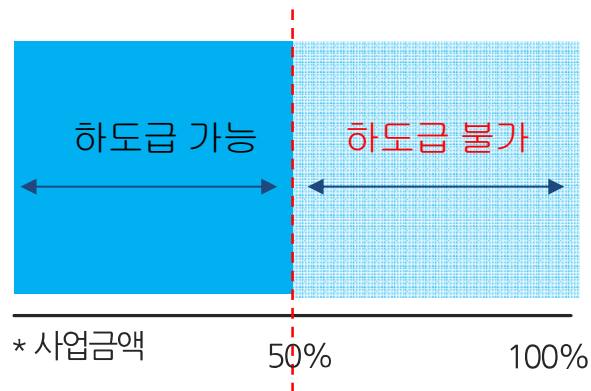
〈적용 시점〉 시행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SW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3. 하도급 제도 원칙 - 하도급 비율 제한

원칙1

국가기관등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SW사업재수급인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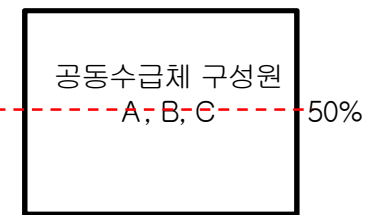
단독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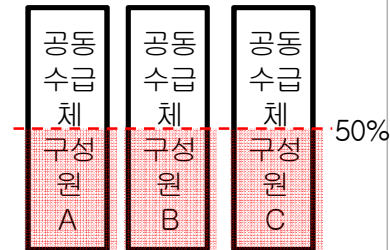
국가기관등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 분담이행방식 >

국가기관등



수급인별로
각자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

3-1. 하도급 비율 제한의 예외사항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0% 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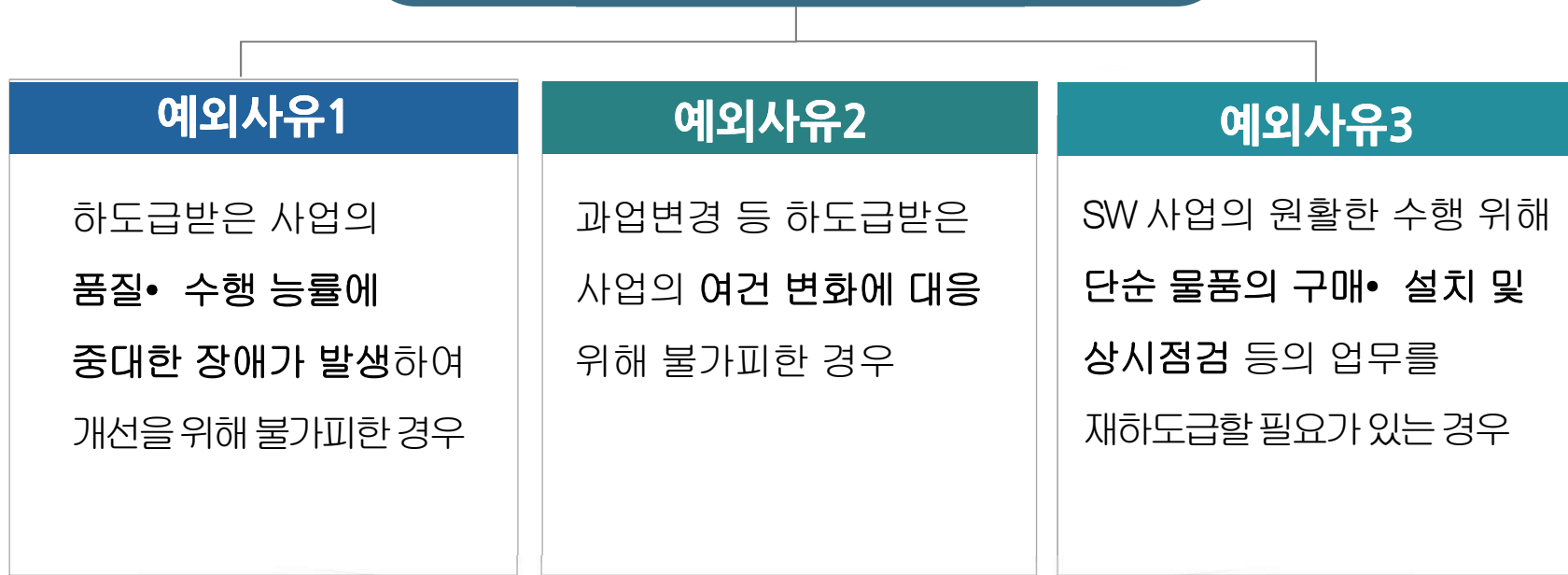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신기술· 전문기술 필요한 경우	
단순 물품	HW /설비	상용SW	기타	신기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특별법」상 유망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 중 SW 관련 기술· 서비스
	항온 항습기, 서버 등	DBMS 등	단순조사 업무, 외부자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신기술, 신기술 적용제품, 신제품 중에서 SW 신기술
구매 설치 용역등	※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SW는 제외			전문 기술	미래부장관이 공고한 SW 신기술
	구매· 설치· 유지보수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SW 관련 기술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SW 관련 기술
					미래부장관이 공고한 SW 관련 전문기술

4. 하도급 제도 원칙 - 재하도급 금지

원칙2

하도급 받은 SW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재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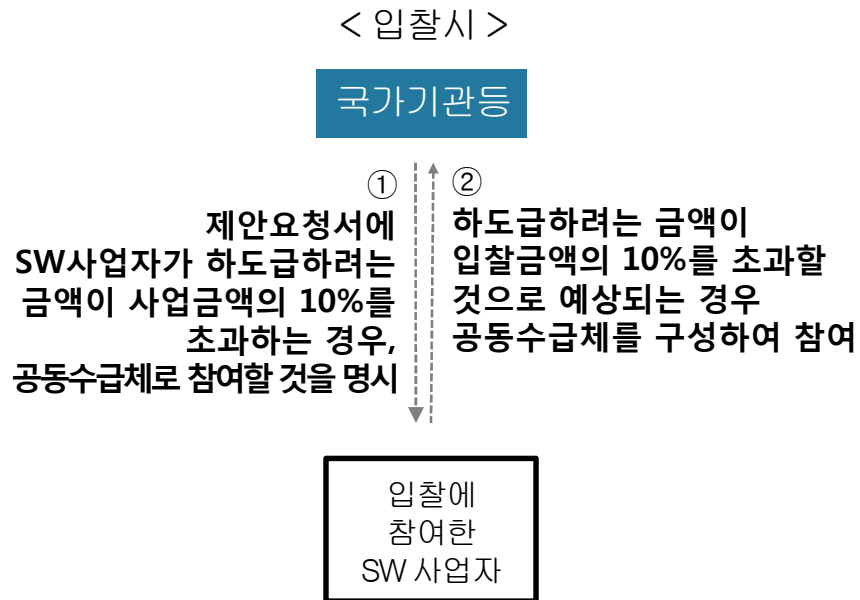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5. 하도급 제도 원칙 - 공동수급 활성화

원칙3

수급인이 사업금액의 10% 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국가기관등이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SW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동수급 참여 요청 및 확인 방법



공동수급체 5인 초과 시

사업금액의 10% 초과하는 하수급인 5인 초과시,
 ① 사업금액 비율이 높은 순
 ② 과업 중요도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사업자간 협의 결정

※ [참고] 공동계약운용요령(기재부 계약예규)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인 이하

6. 하도급 관리 체계

SW 사업자는 입찰 참여시와 계약 체결 시 'SW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기관등은 하도급 준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SW 사업자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국가기관등

〈하도급 계획서를 확인하여 하도급 비율 등 관리〉

- ①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 여부 확인
- ②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 확인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국가기관등은 [재]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하도급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참고] 하도급 제도 변경 전 · 후 비교 (‘15.12.31. 시행)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비율 제한	제한 없음	전체 사업 금액의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제한 없음	원칙적 금지
하수급인의 공동수급체 참여	별도 근거 없음 *다만,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제안 서 평가 시 상생협력 평가(중소기 업 참여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하도급하려는 금액이 사업금액의 10%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적정성 평가 시 제출	입찰 시, 계약 체결 시 제출
하도급 승인 기간	최대(14일)	최대(10일)

III. SW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사항

1. 사업계획수립 단계



① SW사업의 요구사항 상세화

- 전체과업에서 용역과 물품구매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히 하여 발주

② 하도급 예상비율 산정

- 과업의 세부내역을 분석하여 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고 하도급 예상비율을 산정
- 하도급 예상되는 금액이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유도

③ (재)하도급 규정의 확인

- (재)하도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시 SW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계획단계에서 고려
- * 50% 초과 하도급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④ 하도급 평가기준 수립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평가 항목은 일정한 범위에서 국가기관등이 가감 조정 가능

2. 입찰단계

사업계획
수립단계

입찰단계

계약단계

하도급
승인신청

하도급
관리

하도급
변경

국가기관등은 SW사업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 10% 초과**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등은 아래의 사항을 입찰공고 시 포함
- ①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의 법적 근거
- ② SW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제출요청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
- ③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
* 가감·수정된 경우, 조정된 기준
- ④ 공동수급체 구성권고 및 참여기준
* 하도급 금액비율 제시
- ⑤ 위반시 시정요구

입찰에 참여하는 SW사업자

- 하도급을 하려는 SW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 제출
- ① SW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50% 초과 금지**
* 하도급제한 예외 해당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② 하도급 수행계획서
-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 ④ 물품 구매 계획서

3. 계약단계

사업계획
수립단계

입찰단계

계약단계

하도급
승인신청

하도급
관리

하도급
변경

국가기관등은 하도급 제한 범위 및 예외사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SW사업자

- 낙찰자로 선정된 SW사업자(수급인)는 계약체결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 ① SW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제출
- ② 하도급 수행계획서
- ③ 하도급 산출내역서
- ④ 물품 구매 계획서

국가기관등 점검사항

- SW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을 점검

(하도급 제한비율 준수여부 점검)

-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율은

50% 초과 불가

- ✓ 예외사유의 타당성 검토

(단순물품 구매·설치 용역, 신기술, 전문기술)

4.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

사업계획 수립단계

입찰단계

계약단계

하도급 승인신청

하도급 관리

하도급 변경

국가기관등으로부터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사전승인 신청주체

계약상대자(수급인)가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을 국가기관등에 신청

국가기관등

(재)하도급 승인신청

계약 상대자

- 공문 전송(우편, 메일, 팩스 등)
- SW 산업정보종합 시스템(SWIT)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국가기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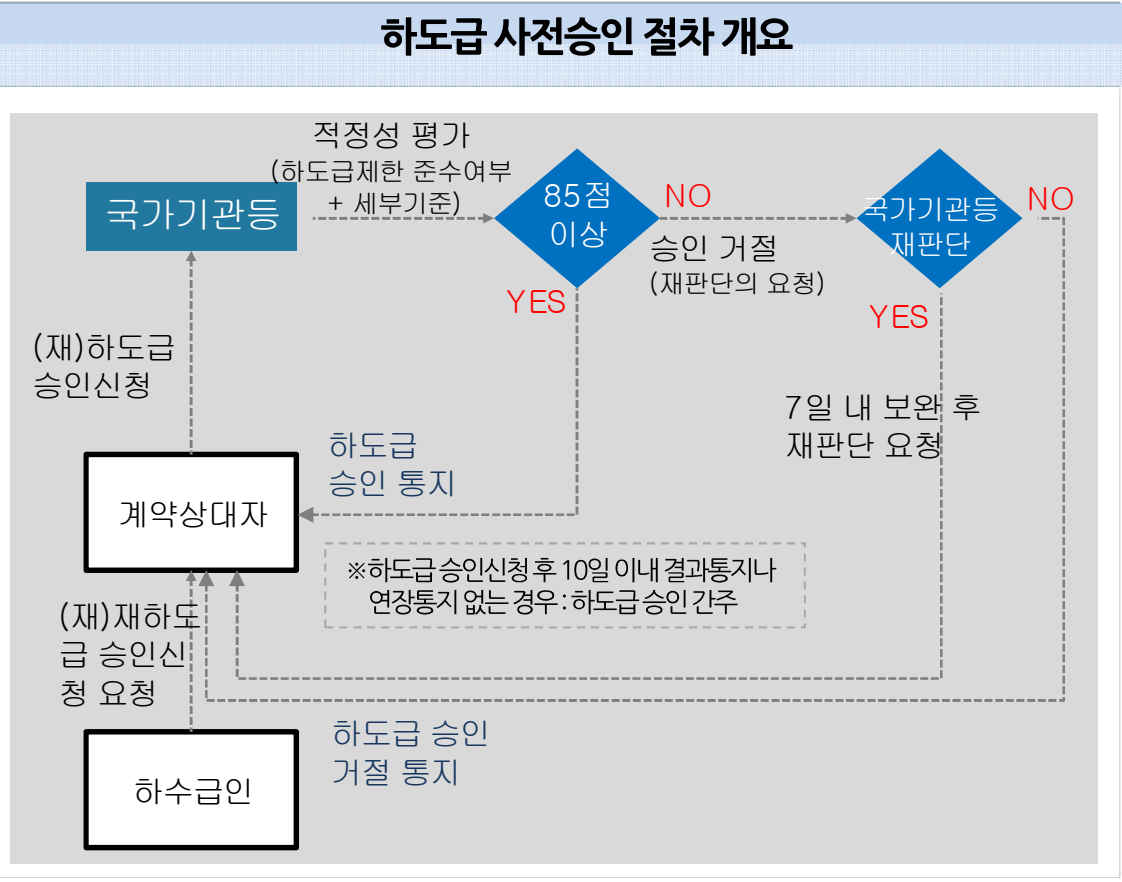
국가기관등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및 재판단 요청



모든 하도급은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6. 하도급 관리

사업계획
수립단계

국가기관등은 SW 사업자가 승인한 내용대로 (재)하도급 계약을 이행하는지
하도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단계

계약단계

하도급
승인신청

하도급
관리

하도급
변경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절차

- ① 국가기관등은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수 여부 확인 방법·절차·주기 결정
- ②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방법 등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준수여부 보고
* 고시 별지4호서식 활용
- ③ 국가기관등은 승인된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 확인

하도급 준수여부 주요 점검항목

하도급 제한 범위
(하도급 및 재하도급)

위반시 시정 요구 및
입찰참가제한 가능

7. 하도급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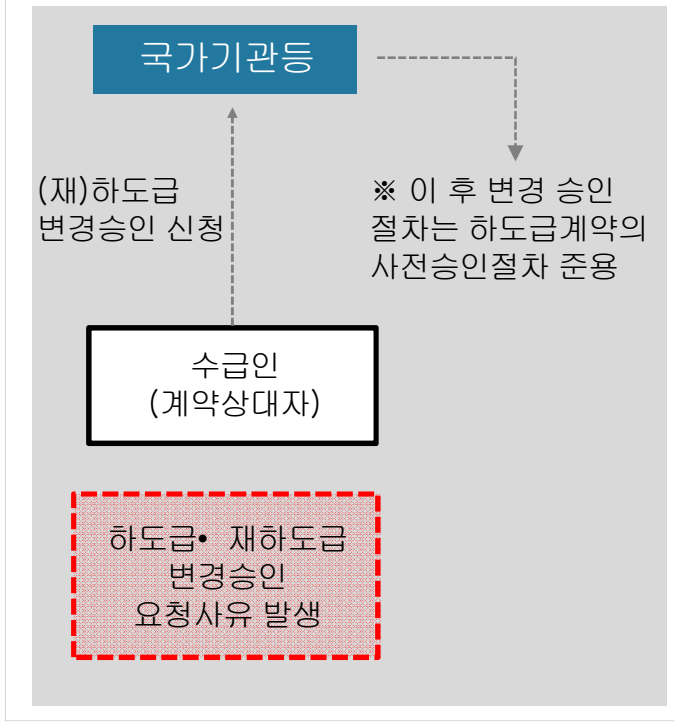
- 사업계획 수립단계
- 입찰단계
- 계약단계
- 하도급 승인신청
- 하도급 관리
- 하도급 변경

SW사업자(수급인)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에게 일정한 사유 발생시 국가기관등에 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경승인 요청 사유

- ① (재)하수급인의 도산,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승인받은 (재)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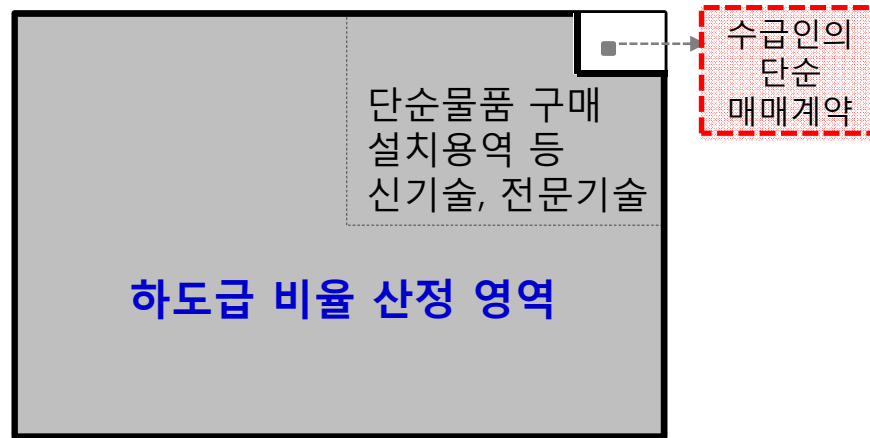


IV. 하도급 제도 Q&A

Q1. 하도급 제한 비율 산정 시,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비율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과업(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비용도 포함되는가?

**A2. 하도급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도 전체 사업금액에 포함됩니다.**

<하도급 비율 산정 예시>



※ 수급인이 단순물품 구매를 하도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에 해당

Q2. 다음의 사업 예시에서 하도급 비율과 자체수행 비율 산정 방법은 (단독수급인 경우)?

<예시> 과업범위에 하도급 제한 비율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과업이 포함되는 경우

사례 1 : 예외사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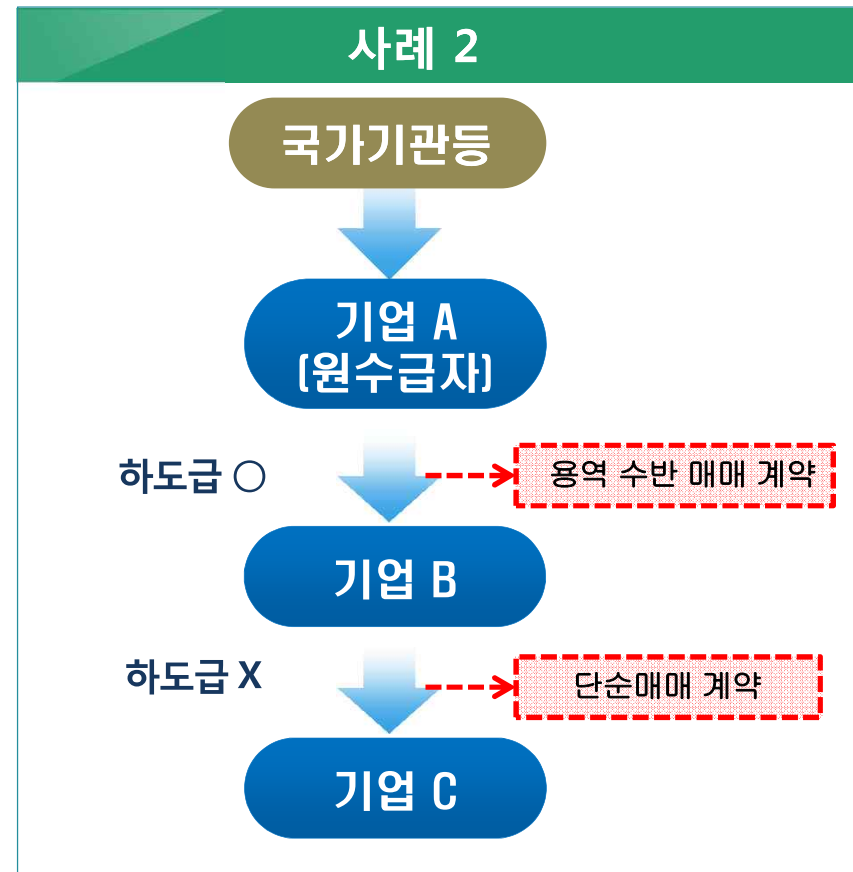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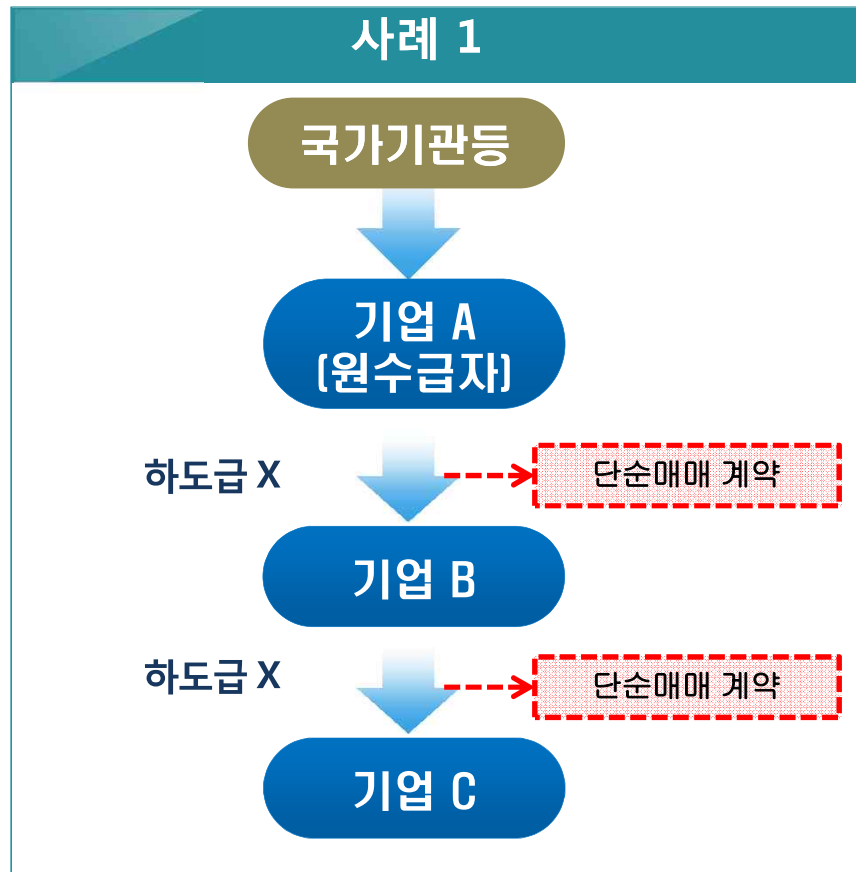


사례 2 : 예외사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비율이 50% 초과인 경우



Q3. 하도급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재하도급에 해당하는가?

A3.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매매계약의 경우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매매 계약이더라도 구매 계획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